

수원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1나75061 판결 [계약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규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수진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리내

담당변호사 김현준

변 론 종 결 2022. 11. 23.

판 결 선 고 2022. 12. 7.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가단528383 판결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1행의 “약정한 사실”을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E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포기하고,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대리인 란에 E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E 명의로 2019. 10. 22. “본인은 첨부된 아래 계약을 본인의 사정상 완료할 수 없기에 정식으로 포기합니다”라는 내용의 포기각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포기각서에 첨부된 계약이 이 사건 매매계약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는 F이었는데, E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인 피고로부터 계약 해지 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포기각서의 존재만으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현지, 판사 김수정, 판사 정하정